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
강대호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
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
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
를 위하여,
기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가로
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범위를
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넓히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
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